#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55

제출연월일: 2021. 5. 31.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상점가 정의가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골목형상점 가 지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하며,

다. 농어민지역매장 운영자 지역제한 규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법제 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점가'정의 조항 개정(안 제2조제4호)
-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 '골목형상점가'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항 신설(안 제4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항 신설(안 제47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조항 신설(안 제48조)
- 다. 농어민지역매장 운영자 지역제한 개정으로 규제 완화

- 16 (제236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 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 잘못된 문장성 분과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

####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 나.「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9721호, 2021. 5. 17.)
- 라. 입법예고: 2021. 5. 3. ~ 5. 24.(21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본문 중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이하 "도매업 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을 "제14조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을 "상인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을 "법 제6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4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구역중 구청장이지정한 곳을 말한다.

- 18 (제236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제1항 중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도매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구청장은 시장"으로, "하여햐 한다"를 "해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폭 12미터 이상"을 "지정할 경우 폭 12미터 이상"으로, "보며,"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제4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를 "관리해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제4조제2항 중 "협약에 의하여"를 "협약하여"로,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를 "시설물 관리를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상인의 의견을 모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 철거를 요구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 시설물의 공공 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의시설의 설치는"을 "편의시설 설치기준은"로, "호의 기준에 따른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을 "양방향으로 장보기손수레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를 "경우상인 의견을 모은 다음"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 한다.
- 제5조의2 중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를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로 한다.
- 제5조의3 중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을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또는"으로, "때에는 당사자의"를 "경우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 제6조제2항 본문 중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를 "점포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점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업을 영위"를 "영업"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 하여야"를 "구분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 개의 필지에 다른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
- 제7조제3항 중 "및 고객편의시설을"을 "또는 고객편의시설을"로,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를 "그 시설의"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면적에 포함한다.
-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마목까지 및"을 "마목 또는"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을 "근린생

20 (제236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활시설"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면적에 포함한다.
- 제8조제2항 중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되는 면적 중 건축물 연면적"으로 한다.
-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을 "시장 인정을 취소할 경우"로, "청문절차를 거쳐야"를 "청문을 실시해야"로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의2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로, "경우에 청문의"를 "경우 청문"으로, "시장의 인정 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상인회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출석요구서"를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로, "지정 일시"를 "일시"로, "일시를 조정할 수"를 "일시 변경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구청장은 시장 인정을 취소한 경우 바로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으로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 소식지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12조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 제13조 중 "수렴한"을 "모은"으로 한다.
- 제15조 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을 "개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임시시장 면적이 영 제6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의"를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의"를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의"를 "화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객의 안전유지
  - 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 처리
  - 5. 기타 상거래 질서 확립 등
-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를 "제16조에 따른 개설신고 없이 시장을 개설한 자 또는 거짓이나"로, "부과한다"를 "부과해야 한다"로 한다.
- 제19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으로,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를 "농어민직영매장(이하 "직영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0조의 제목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을 "(직영매장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영매장"으로 한다.
- 제21조의 제목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을 "(직영매장 신청 자격)"으로

22 (제236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영매장"으로,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직영매장 사용료 등)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3조제1항 중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을 "규칙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을 "회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 시장의"를 "다만, 시장"으로 하다.
- 제24조제1항 중 "규약"을 "규칙 제12조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변경안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해야"로 한다.
-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함으로써 성립한다"를 "해야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 또한"을 "경우에도 이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 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할 경우 상인회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6조제3항 중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를 "구 소식지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로 한다.

- 제26조의2제1항 중 "경우에 청문의"를 "경우 청문"으로, "상인회의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상인회 대표에게 보내 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요구서"를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 서"로, "지정 일시"를 "일시"로, "일시를 조정할"를 "일시 변경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인회의"를 "상인회"로, "때에는 지체없이"를 "경 우 바로"로, "명시하여"를 "명시한 공문으로"로 한다.
- 제27조제1항 중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로, "신청 할"을 "신청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소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상인회에서 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은 반 납해야 한다.
- 제28조제2항 중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24 (제236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보조사업의"를 "보조사업"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을 권유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제1항 중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를 "구청장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를 "위탁한 경우"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한다.
- 제33조제1항 중 "시장관리자의"를 "시장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제33조제2항 중 "시장관리자의"를 "시장관리자"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 제33조의2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라"로, "청문의"를 "청문"으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를 "시장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요구서"를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로, "지정 일시"를 "일시"로, "일시를 조정할 수"를 "일시 변경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관리자의 지

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바로"로, "명시하여"를 "명시한 공문으로"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중 "과태료 부과 · 징수"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한다.

-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구역 중에서 제41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아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는 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 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 소식지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4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 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 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 26 (제236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제4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 2.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골목형상점가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43조 앞에 "제10장 과태료 부과·징수"를 삽입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제1조(목적)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활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	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	<u> 것</u>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	2
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u>도매업ㆍ</u>	<u>도매업·소</u>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	매업 또는 용역업(이하 "도매업
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	<u>등" 이라 한다)</u>
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	
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3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제14조에 따라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u>일정한 기간동안</u> 울산광역시 중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 법 시행령 |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 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 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 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 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 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인구 3 0만 이하인 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신 설>

- 5. 6. (생략)
-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 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 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4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구역 중 구청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 다.
- 5. · 6. (현행과 같음)
-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7. ----- 법 제65조 및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시행규칙」--- 상인들-----

- 8. "시장관리자"라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 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 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 은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 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 태로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곳으 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 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 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 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 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 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 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

8	법_	제67조	비따
<u>라</u>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 '	<u> 및 영</u>
제3조에 따른 조	직을	말한다.	<u>-</u>
제3조(시장의 구역)	_		
- <u>도매업 등</u>			
② <u>구청장은</u> 시장			
<u>চ</u>	<b>  0 </b>	한 <u>다.</u>	
3 2	시정	할 경우	폭 1
<u> 2미터 이상</u>			
<u>본다. 다</u>	만,	보행자	전용
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	터 미
만의 양방통행로틑	<u> </u>	'획으로	건축

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 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 로 보지 않는다.

#### <단서 신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 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 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 거나 직접 유지 · 보수를 할 수 있 다.

#### <후단 신설>

-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 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 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 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 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 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으로 보지 않는다.

리) ① ------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 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 ----- 협약하여 -----
- ----- 시설물 관리를 위탁----.
-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 시설이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상인의 의견을 모은 상인조 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 철거를 요구하면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 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 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 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⑤ (생략)

- 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 4. (생 략)
  -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 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 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 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 시 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 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 음)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 호와 같다.
  - 1. ~ 4. (현행과 같음)
  - 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u>양측방향으</u> ----- <u>양방향으로 장보</u> 기손수레를 --------- 확보해야 ----.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 장은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시장 <u>상</u> 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생 략)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 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 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생략)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u>경우 상인 의견을 모은 다음</u>
23 -23 -23
<u>설치해야</u>
제5조의2(화재공제사업 지원)
<u>상인 또</u>
<u>는 상인조직에</u>
제5조의3(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
진계획 승인 또는
<u>경</u>
<u> 우에는</u>
<u>제출해야</u>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점포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점
丑
영업
<u> </u>
·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현
행과 같음)
(2)

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 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 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 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 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 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 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 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는 용도의 시설
  - 2. · 3.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 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 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u>구분되어</u>
<u>o</u> }
이 경우 한 개의 필지에 다른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
<u>야 한다.</u>
③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u>그 시설의</u>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
과 부지)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면적에
포함한다.
1
<u>마목 또는</u>
근린생활시설
2. · 3. (현행과 같음)
② 포함되는 면적 중
건축물 연면적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
설과 부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면 같다.

1. ~ 5. (생략)

-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 장은 법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2 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 에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 석요구서를 시장의 인정 취소 대 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 표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 등

<u>적에서</u> 제외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인 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 시장 인 정을 취소할 경우 ------- 청문을 실시해야 ----.
-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경우 청문 -----
  - 상인회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 일시-----
  - 일시 변경을 요청할 ---.
  - ③ 구청장은 시장 인정을 취소한 경우 바로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 으로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 소식지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 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 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 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 지 여부를 워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 대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 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 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 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 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 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 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 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 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한다.</u>
제	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또는
ᆀ	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
/\II	101 ( 0 년 5 0 의 ) 그 / 1 0 년 ( )
	모은
제	15조(임시시장의 개설)
·	
	개설
	<u> </u>
<u>제</u>	16조(임시시장의 신고) 임시시장
	면적이 영 제6조 이상인 임시시장
	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 제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u>시장</u>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u>다음</u>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 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 리
-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신 설>

제18조(임시시장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u>법 제14조제</u> 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 태료를 <u>부과한다</u>.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구 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 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시장
2 -11 -11 -1
<u>수행해야</u>
<u>위탁</u>
1. 시설
2. <u>화재</u>
3. 고객의 안전유지
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
<u>처리</u>
5. 기타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제18조(임시시장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u>제16조에 따른 개</u>
설 신고 없이 시장을 개설한 자 또
는 거짓이나
레10 7 (노시 미 기 사 메 기 사 기 기 )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 접 소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 는 시장(이하 "공설시장" 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 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 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구 청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 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 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 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구청장은 제19조에 의한 농어 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 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 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 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u>구청장</u>
농
어민직영매장(이하 "직영매장"
이라 한다)
<u> </u>
•
제20조(직영매장 운영)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영매장
<u>¬ 0 ¬ 0                               </u>
제21조 <u>(직영매장 신청 자격)</u>
<u>직영매장</u>
<u>농산물·임산물·</u>
축산물 또는
제22조(직영매장 사용료 등) 구청장
은 제19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u>수 있다.</u>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 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 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 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 되어야 한다.
  -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생 략)
-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 대표자는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 | 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 --- 경우-----

	<u> 규칙 제12조여</u>	에 따	<u>라</u>		
	2				
				<u>회원</u>	
			<u>다</u>	만, ㅅ	<u>   장</u> -
제	24조(상인회	정관	등) (	<u> </u>	
		규칙	제12	조에	따른
	<u> 규약</u>	}	정한다	<u>.</u> .	

-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② -----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변경안을 발의하고 총 회에서 의결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3조 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할 경우 상 인회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에 따 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 | 른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 (<u>2</u>) -----

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되 사무 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 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② 7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 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에서 발 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 저 차)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 우에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상인회의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 표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u>해야한</u>
<u>다</u> <u>경우</u>
<u>에도 이와</u>
③
<u>갖</u> 추어 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구 소식지에 공</u>
고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
<u>시해야</u>
제26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
차) ① <u>경우</u>
<u> 청문</u>
- <u>상인회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u>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
일시
- <u>일시 변경을 요청할</u>

- ③ 구청장은 <u>상인회의</u> 등록을 취
   ③ ----- <u>상인회</u> ---- 

   소한 <u>때에는 지체없이</u> 그 사유를
   -- <u>경우 바로</u> -----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명시한 공문으로 ----- 

   한다.
   --.
-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 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제65조제7항 및「보조금의 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

     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

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 -- 경우 바로 -----명시한 공문으로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 <u>사업계획서</u>----------. 신청할 ----.. 이 경우 소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 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 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 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 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1. · 2. (생 략)
  -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 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대한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 업비 집행내역
  - 2. (생략)
-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

집행 잔액, 무가가지세 환급금, 이
자발생액 등은 반납해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 (현행과 같
음)
2
보존해야
<u> </u>
<u>다만,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u>
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
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u>제출해야</u>
1.•2. (현행과 같음)
2
1
<u>보조사업</u>
2. (현행과 같음)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

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 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 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 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 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를 지정하거나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u>정신청을 권유</u>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7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 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 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 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1
<u> 구청장은</u>	
<u>경우</u>	

2	<u>위탁한</u>
경우	
<u>경비</u>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관리 자 -----.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 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 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3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 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 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신 설>

②	<u>시장관</u>
리자	

\_\_\_\_\_청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을 실시해야 한다.

절차) ①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라 ---- <u>청문</u> ---------- 시장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 일시-----일시 변경을 요청할 -----.
- ③ -----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소한 경우 바로 ------ 명 시한 공문으로 -----

제9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 장은 영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 을 갖춘 구역 중에서 제41조에 따 른 상인의 신청을 받아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신 설>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 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 소식지 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 에 게시해야 한다.
- 제4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또는 제3호의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신 설>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 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 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2분의 1이상의 동의
-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제4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 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 2.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골목형상점가 영업을 정당한 사 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 시해야 한다.

<u><신 설></u>

<u>제40조</u> ~ <u>제42조</u> (생 략)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u>제43조</u> ~ <u>제45조</u> (현행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와 같음)

<삭 제>

# 근거법규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 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지구
    -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 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 점포의 면

48 (제236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 나. 도매점포 ·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 상일 것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미첨부함.

# 3. 작성자

○ 소 속 : 경제진흥과

○ 직 급:지방행정주사

○ 이 름 : 박현정

○ 연락처 : (052)290-3321